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규제정책의 국제 동향

2021. 11.

1. 논의의 배경

-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는 경쟁당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및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소위 GAFAM¹⁾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업무영역을 넓혀가며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쟁관련 규제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어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 더욱이 빅테크의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 또는 제공하고 있는 금융서비스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요국의 금융감독 당국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율방향에 대해 논의
 - 한국에서도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영업모형(business model)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율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었고, 이와 별개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감독 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²⁾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일반 경쟁정책 동향을 우선 살펴볼 필요

2. 빅테크의 금융업 관련 현황

- 빅테크의 금융서비스는 주력 사업의 종류, 서비스 제공 지역의 금융환경, 기업의 적극성 등에 따라 제공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³⁾
 - 전자상거래 기업은 상거래를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으로 신용평가, 소액대출 등의 서비스, 소셜미디어·메시징 기업은 이용자 간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1) Google, Apple, Facebook 및 Amazon을 지칭하는 용어임.

2) 여기서 금융플랫폼이란, 금융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금융 상품·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3) 이보미, “빅테크의 금융서비스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KIF VIP 리포트* 2020-17, 한국금융연구원, 2020.12.

- 중국,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전통적 결제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기반으로 대출, 투자, 보험 등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음.
- 미국의 4대 빅테크인 GAFa를 포함하여 많은 빅테크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 중에 있음.
 - 주력 비금융 사업을 보조하는 정도의 금융서비스만 제공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금융전담 계열사를 설립하거나 금융업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적극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 대출서비스의 경우 빅테크가 라이선스 없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제공하는 경우, 라이선스 없이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로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
 - * 빅테크의 자산관리 및 투자 관련 서비스는 간편결제 서비스에 예치된 이용자 자금으로 투자하는 서비스(면허 취득)나 금융상품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중개(면허 취득) 또는 판매 연계 온리) 등으로 구분
 - * 빅테크가 비금융서비스를 보조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보험상품을 개발·제공하거나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음.

〈표 1〉 해외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제공 현황

Big tech	Main business	Banking*	Credit provision	Payments	Crowd-funding	Asset management	Insurance
Google	Internet search/advertising	✓*		✓			
Apple	Tech/producing hardware			✓			
Facebook	Social media/advertising			✓			
Amazon	E-commerce/online retail		✓	✓	✓		✓
Alibaba (Ant Group)	E-commerce/online retail	✓	✓	✓	✓	✓	✓
Baidu (Du Xiaoman)	Internet search/advertising	✓	✓	✓	✓	✓	✓
JD.com (JD Digits)	E-commerce/online retail	✓	✓	✓	✓	✓	✓
Tencent	Tech/gaming and messaging	✓	✓	✓	✓	✓	✓
NTT Docomo	Mobile communications	✓	✓	✓	✓		
Rakuten	E-commerce/online retail	✓		✓		✓	✓
Mercado Libre	E-commerce/online retail		✓	✓		✓	

✓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 through big tech entity and/or in partnership with financial institutions outside big tech group in at least one jurisdiction. ✓* Launch expected in 2021. % The core activity of an entity engaged in banking is taking deposits, though regulations vary across countries.

Sources: BIS (2019); Citi GPS (2018); FSB (2019b); IBFED and Oliver Wyman (2020); van der Spek and Phijffer (2020); public sources; FSI.

자료: Juan Carlos Crisanto, Johannes Ehrentraud and Marcos Fabian, “Big techs in finance: regulatory approaches and policy options,” March 2021.에서 전재

〈표 2〉 해외 빅테크의 금융업 면허 취득 현황

Licence held	Licences and market presence																	
	Brazil			China			European Union			Hong Kong SAR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B	C	P	B	C	P	B	C	P	B	C	P	B	C	P	B	C	P
Amazon									✓						✓			✓
Apple																		✓
Facebook									✓						✓			✓
Google									✓						✓			✓
Ant Group			✓	✓*	✓	✓			✓	✓		✓			✓			✓
Baidu				✓*	✓	✓												
JD.com				✓	✓	✓				✓*								
Tencent				✓*	✓	✓				✓		✓						
Mercado Libre			✓															
NTT Docomo							✓		✓						✓			
Rakuten							✓		✓						✓			✓

Market presence in partnership or joint venture with other FIs. ✓ Big tech has entity within group that holds financial licence.
 Big tech offers financial services both through partnership or joint venture with other FIs and has entity within group that holds financial licence. ✓* Shareholding of big techs in these banks is below 50%.

B = banking licence. For the European Union and United Kingdom, CRD credit institution; for Hong Kong SAR, authorised institution; for Brazil, BCB approval under Resolution 4.122/2012 and Circular 3.649/2013; for the United States, National Bank Charter or state-level Bank Charters (commercial banks, savings banks, and trust companies). **C = credit licence.** For Hong Kong SAR, money lender licence; for the United States, non-bank lender licence (state-level); for Brazil, Sociedade de Crédito Direto or Sociedade de Empréstimo entre Pessoas; for China, internet micro lender or consumer finance licence. **P = payments licence.** For the European Union, payment institution or e-money institution; for Brazil, Instituição de pagamento; for the United States, money transmitter, sale of checks, money services business (governed primarily by state law); for China, third-party payment licence.

The analysis excludes cases in which payments are made and/or credit is extended for purchasing products and services exclusively within the platform.

Sources: Encontre uma instituição (BCB webpage); HKMA registers; EBA Euclid Register; FCA Financial Services Register; NMLS® Consumer Access; various news and reports.

자료: Juan Carlos Crisanto, Johannes Ehrentraud and Marcos Fabian, “Big techs in finance: regulatory approaches and policy options,” March 2021.에서 전재

〈표 3〉 국내외 주요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제공 현황4)

	Amazon	Apple	Facebook	Ebay	Google	Groupon	Microsoft	Orange	Mercado Libre	Vodafone
결제 송금	Amazon Pay(O) -온·오프라인결제 -간편송금 -미국, 일본, 유럽 등 17개국 서비스	Apple Pay(O) -온·오프라인결제 -간편송금 -미국, 일본, 홍콩 등 55개국 서비스	Messenger Pay(O) -온라인결제 -간편송금 -미국, 영국, 유럽 등 20개국 서비스	PayPal(O) -온·오프라인 결제 -간편송금 -미국, 유럽, 아시아 등 203개국 서비스	Google Pay(O) -온·오프라인 결제 -미국, 프랑스, 홍콩 등 75개국 서비스	Groupon Payments(P) -미국 온라인 결제서비스	Microsoft Pay(O) -온라인결제 -미국, 영국 등 14개국서비스	Orange Cash(O) -온라인 결제 -프랑스, 스페인 서비스	Mercado Pago(P) -온·오프라인 결제 -간편송금 -라틴아메리카 8개국 서비스	M-Pesa(P) -계좌연동 -온·오프라인 결제 -간편송금 -동아프리카 등 10개국 서비스
금융 대출	Amazon Lending -입점 업체 중 선정하여 소액대출 입점 업체 대상 대출서비스 -Goldman Sachs 제휴(개인대출플랫폼인 Markus 이용) -리블링 방식		Charged -Facebook 광고주 대상 후불 서비스 -Clearbanc 제휴	PayPal Working Capital 등 -개인·기업 대출 -Webbank제휴 -02년 인수, '15년 분사	Lending Club Program -Partners 대상 저금리대출 -Lending Club 제휴 당좌예금계좌 -씨티은행, SFCU 등과 제휴			Orange Bank -인터넷은행 -개인 대출, 모기지대출	Mercado Credito -입점업체와 소비자 대상 소액대출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서비스	M-Shwari -인터넷은행 -예금·대출 서비스 -예금보호대상
자산 관리	Cora -VR 자산관리자 -Fidelity Labs 제휴							Saas -로보어드바이저 -바이저 -Additiv 제휴	Mercado Libre Fund -벤처캐피탈 펀드	
보험	Amazon Protect -판매제품 보험 -유럽지역 서비스 -London General Insurance Company 제휴 Haven -직원 대상 헬스케어 보험 -JPMorgan Chase, Berkshire Hathaway 합작	AppleCare+ AppleCare Protection Plan -판매제품 보험 -AIG 제휴		ShipCover Insurance -판매제품 배송 보험 -Parcel Insurance Plan과 제휴				보험 서비스 -20년 이후 예정	파일럿 테스트중	Linda Jamii -소액건강보험 -Changamka Micro Insurance, 투자회사 Britam 제휴
가상 화폐			Libra 개발 중 -지역 단일통화를 이용한 stablecoin, 네트워크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다중통화 Libra coin 제공							

4) 이보미, “빅테크의 금융서비스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KIF VIP 리포트 2020-17, 한국금융연구원, 2020.12.

	Alibaba	Baidu	Tencent	Line	NTT Docomo	Rakuten	Go-jek	Grab	Ola Cabs
결제 송금	Alipay(P) -온·오프라인결제 -간편송금 -중국, 일본, 미국 등 42개국 서비스 Huabei(Ant Credit Pay) -신용결제 서비스	Baidu Wallet(P) -PayPal 협력 -온라인결제 -간편송금 -중국, 방콕 등 6개국	Tenpay(P) -온·오프라인결제 -간편송금 -중국 등 15개국 서비스 그 외 Wechat Pay, QQ Wallet 등	Line Pay(P) -온·오프라인결제 -간편송금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4개국 서비스	Osaitu Keitai(P) -일본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 -온·오프라인 결제 -간편송금	Rakuten Pay(P) -일본 최대 모바일 결제 플랫폼 -온·오프라인 결제	Go-pay(P) -인도네시아 최대 모바일 결제 플랫폼 -온·오프라인 결제 -간편송금	GrabPay(P) -온·오프라인 결제 -간편송금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8개 국가에 서비스	Ola Money(P) -게티연결 -잔액충전 -온·오프라인 결제 -간편송금 -인도 모바일 결제 플랫폼
예금 대출	Mybank -인터넷은행 -중소기업, 농업인 내구재 구매 소비자 대상 대출 Jiebei(Cash Now) -소비자대출 Zhima Credit -개인·중소기업 신용평가	Baixin Bank -인터넷은행 -중신은행(Citic Bank)와 합작 -금융상품 판매 및 -소액대출 Baidu Umoney -소비자대출	Webank -인터넷은행 -소액대출, 오토론 Tencent Credit -개인·중소기업 신용평가	Line Pocket Money -소비자대출 Line Score -개인신용점수 산출 서비스	인도네시아 자동차 대출 -파일럿 테스트중 -Mizuho Bank 제휴 Shinsei Bank Smart Money Lending -Shinsei Bank 제휴 -사용자 대상 대출	Rakuten Bank -인터넷은행 -Rakuten Ichiba 가맹점 대상 대출	Grow with Grab -중소기업운영자금 -소액대출 Grab financial Services Asia -일본카드사 Credit Saison과 조인트벤처	Ola Credit -파트너 운전자 대상 대출 -인도주립은행 Flexi Loan 제휴	
자산 관리	Yu' ebao -글로벌 최대 MMF -지회사 Tianhong Asset Management 운용 Antidag, Taobao Crowdfunding -크라우드펀딩 Ant Fortune -자산관리플랫폼 -각종 투자상품 판매	Baifa -MMF -China Asset Management 운용	Licaitong -자산관리플랫폼 -MMF 판매(China AMC외 3사 운용)	Line Smart Invest -전자자동차, 드론 등 -티미별 소액투자 -모바일 플랫폼 -일본온라인증권사 Folo 제휴	Rakuten 증권 -증권의 금융상품 안내 Raku-Wrap -Rakuten 증권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	MMF 중개 -로보어드바이저 -Bibit과 제휴 P2P대출 -인도네시아 P2P 기업인 Findaya, Dana Cita, Oktivaku 제휴	GrabInvest -로보어드바이저 -Bento Invest 인수 -소액투자서비스 (Autoinvest) 제공 -Fullerton Fund Management, UOB Asset Management 제휴		
보험	Xianghubao -상호보험(질병·상해보장) Zhongan Insurance -손해·여행·건강보험 -Tencent, Pingan Insurance 공동설립	Baian Insurance -여행·건강·교육·저축성 보험 -Allianz, Hillhouse Capital 합작	Wesure -보험 가입·조회 -Taikang Life 등 제휴 Zhongan Insurance -손해·여행·건강보험 -Alibaba, Pingan Insurance 공동설립	Line Insurance -소액단기 손해보험 -일본보험회사 NKSJ 제휴	생명보험 -Nippon Life제휴 Anju Insurance -건강·여행·건강보험 -Tokio Marine & Nichido생명보험 제휴	Rakuten Life Insurance -생명보험 Medical Insurance -온라인 의료보험	여행보험, 운전자 보험 -보험사 Pasar Polis 제휴 원격의료상담 -헬스케어기업 DoctorAnywhere 제휴	여행보험, 교통사고 보험 -Chubb 제휴 운전자보험 -Chubb, ZA Tech, NTUC Income 제휴	Chalo befiakar -운전자보험 -Bajaj Allianz 제휴 여행보험 -Acko, CICI Lombard 제휴
가상 화폐	P2P Nodes -채굴 플랫폼	Xuperchain -블록체인 기반 -오픈네트워크	QQ Coin -가상화폐 Trust SQL -개방형 블록체인 플랫폼(Baas)	Link -가상화폐 Bitbox -거래소	Rakuten Edy -가상화폐네트워크 Rakuten Wallet -거래소				

주 : O는 기존 금융기관의 결제 인프라를 이용하는 오버레이 시스템(overlay system), P는 독자적인 결제 인프라를 갖추는 별도 시스템(proprietary system)을 의미

자료 : “FinTech and market structure in financial services”(FSB, 2019), “Big tech in finance”(BIS Annual Economic Report, 2019), 기업 홈페이지 등을 참조(20.9 기준)

	네이버	삼성전자	엘지전자	카카오	케이티	SK텔레콤	레이나스트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토스)	NHN페이코
결제 송금	네이버페이(P/O) 온·오프라인결제 전화번호 간편송금 한국, 일본 서비스	삼성페이(O) 온·오프라인 결제 계좌번호 간편송금 오투이체(한패스, 센트비 제휴) 한국, 미국 등 25개국 서비스	엘지페이(O) 온·오프라인결제 한국, 미국서비스	카카오페이(P/O) 온·오프라인 결제 계좌번호 간편송금 한국, 일본 서비스	케이뱅크 페이(O) 온·오프라인 결제	11번가 간편결제 온라인 결제 핑크 계좌이체 본인계좌 간 다중계좌 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빨대카드(가칭) '20년 ■출시 준비중 ■상업자표시신용카드 (PLCC) ■롯데카드 제휴 ■간편송금서비스(예정) ■마이페이먼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스(O) 온라인결제 계좌·전화번호 간편송금 토스신용카드 토스페이먼트 LG유플러스 PG 부문 인수 	페이코(P/O)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계좌·전화번호 간편송금 한국, 일본 서비스
예금 대출	네이버파이낸셜 신용대출서비스 (예정) 미래에셋캐피탈 제휴 지정대리인 선정 (금융규제 샌드박스)	은행·카드사 신용대출 신청	IBK 온라인지점 적금·카드·대출 상품 가입 기업은행 제휴	카카오뱅크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카카오페이 대출중개 하나·씨티·SC제일·BNK경남 ·부산은행 제휴	케이뱅크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아파트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핑크 적금·대출 KDB산업은행 대우은행 제휴 패스 적금 Sh수협은행제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조건 협상·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 확정금리 조회 토스뱅크 예비인가 인터넷은행 '21년 초 출범 예정 	페이코 맞춤대출 중금리대출 상품 비교 및 신청 가능
자산 관리	네이버페이 투자통장 삼성증권 제휴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통장 CMA통장 미래에셋대우 제휴		지출관리서비스, 카드사용내역, 은행계좌 잔고 확인	카카오페이투자 펀드, 증권, P2P, 크라우드펀딩 중개 피플펀드 등 제휴 타은행 및 증권사의 자산 조회 카카오뱅크 증권계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연계 카카오페이 증권 설립	가계부, 보험금 찾기, 카드 추천, 신용정보 조회 케이뱅크 종합메이계좌 NH투자증권 제휴 금융투자상품 거래	핑크 소액투자 8퍼센트 투게더펀딩 등 제휴 패스 CMA계좌 신한금융투자 제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소액투자 ■어니스트펀드 ■테라펀딩, 팝펀딩 등과 제휴 ■예·적금, 투자 등 통합자산조회 및 맞춤형 상품추천 ■지출관리서비스 ■지출 및 소비 내역 분석 리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액투자 상품 중개 부동산, 펀드, P2P 등 어니스트펀드, 투게더펀 딩, 테라펀딩 제휴 해외주식 판매 신한금융투자 제휴 예·적금, 카드, 투자 등 통합자산조회 토스증권의 투자중개업 본인가 신청('20.8) 	페이코원화 Smart CMA 종합자산관리계좌 원화투자증권 제휴 카드사용내역, 결제예정금액, 예·적금, 거래내역 등 조회 페이코 마이데이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
보험	NF보험서비스 설립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 소상공인 의무보험 가입 서비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제휴	보험추천 서비스 자동차보험, 암보험, 반려동물보험 등 보험중개 상표권('베오센스') 출원		카카오페이 간편보험 자동차보험료 비교, 반려동물보험 간편가입 인바이유 인수 카카오보험(가칭) 설립 추진 중 온라인 손해보험사 '21년초 영업 예정	케이뱅크 보험상품 비교 및 가입 가능	11번가 반품보험 11번가 입점 업체 대상 캐롯손해보험 제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위치보험 ■여행자보험, 운전자 보험, 건강검진 기반 ■보험추천 등 ■삼성화재 제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니보험 판매 국내외 보험사와 제휴하여 해외여행보험, 휴대폰파손보험 등 제공 토스인슈어런스 텔레마케팅 기반 보험대리점(GA) 	페이코 보험추천 보험상품 비교 및 가입 가능
가상 화폐		갤럭시 S10에 삼성 블록체인 월렛 탑재	마코페이(가칭) 지역 가상화폐 LG CNS 직원 대상 파일럿 테스트 중 국민은행 제휴	Klay 가상화폐(자회사 그라운드X 발행)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 Klip 가상화폐지갑	기가체인 개방형 블록체인 플랫폼(Baas) K토콘 스테이블 코인 기가체인에서 사용 김포페이				

주 : O는 기존 금융기관의 결제 인프라를 이용하는 오버레이 시스템(overlay system), P는 독자적인 결제 인프라를 갖추는 별도 시스템(proprietary system)을 의미

자료 : “FinTech and market structure in financial services”(FSB, 2019), “Big tech in finance”(BIS Annual Economic Report, 2019), 기업 홈페이지 등을 참조('20.9 기준)

3.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의 해외 동향

- (BIS) 빅테크의 시스템 위험 가능성을 제기하고 여러 부문의 규제를 혼용하여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고 제시하면서, 빅테크에 대해 기능중심규제와 함께 개별기업기반 접근방식(entity-based rules)을 제시
 - 금융분야에서 빅테크 활동과 관련된 위험은 현행 규제접근 방식으로는 완전히 포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현행 규제가 개별 기업 또는 특정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빅테크 그룹 내의 실질적인 상호 연결 및 금융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의해 생성되는 리스크에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
 - 금융 분야의 빅테크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은 개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넘어서 개별기업 기반(entity-based) 및 영업행위 기반(activities-based) 규칙들을 혼용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
 - 한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면허를 획득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현행 행위기반 접근방식(activities-based approach)*에서 개별기업기반 접근방식(entity-based rules)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도전과제도 대두
 - * 행위기반 접근방식(activities-based approach)은 “동일 행위-동일 규제”로 불리는 것으로서 이런 규제틀 하에서는 규제차익을 기대하면서 규제사각지대로 진입하려는 혁신은 최소화 우려
 - * 개별기업기반 접근방식(entity-based rules)은 EU, 중국, 미국 등에서 주로 경쟁정책당국과 의회에서 주도하여 자리잡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접근방식은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의 임무(mission)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
 - EU의 게이트 키퍼(gate keeper) 지정, 미국의 지정플랫폼(covered platform) 제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등이 개별기업기반 접근의 예
- (미국) 최근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인 GAF(A)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의회를 중심으로 많은 규제 강화방안이 제시

- 2021년 6월에 미국 하원은 거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반독점법안 패키지로서 5개 법률안⁵⁾을 발의하였고, 동 법률안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House Judiciary Committee)도 통과되는 등 법률안 처리가 빠른 속도로 진행
 - * 5개 법안은 ‘미국 선택과 혁신 온라인 법(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플랫폼 독점 종식 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서비스 전환 활성화를 통한 호환성과 경쟁 증진 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ACCESS Act)’,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기업 합병 신청비용 현대화 법(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임.
- 한편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와 법무부는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혐의를 조사하였으며, 2020년 10월에 구글, 12월에 페이스북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
 - * FTC와 법무부는 구글을 제소하면서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제조사와 자사 간 서비스 우대 계약을 맺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 * 이에 대해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021년 6월 28일 FTC 등이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제소한 반독점 소송에서 독점력 입증 근거가 부족하고 해당 인수합병에 대한 제소가 시기상 너무 늦었다는 점을 내세워 기각
- 이번 법률안 패키지에 도입된 지정플랫폼(covered platform) 제도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시장획정 등의 전통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었기 때문
 - * 신속한 규제 적용을 위해 플랫폼 반독점 규제대상에 포함되는(covered) 플랫폼을 사전

5) 5개 법안은 ‘미국 선택과 혁신 온라인 법(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플랫폼 독점 종식 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서비스 전환 활성화를 통한 호환성과 경쟁 증진 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ACCESS Act)’,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기업 합병 신청비용 현대화 법(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임. 이 중 마지막 현대화 법안은 법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의 예산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임.

에 지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간 유지

- * 지정 플랫폼에 대해서는 자사 상품을 다른 회사의 상품에 비해 우대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 조항을 두었고, 지정 플랫폼이 다른 사업부를 두고 지정 플랫폼에서 상품을 파는 것도 이해상충을 이유로 금지
- * 또한 지정플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user)와 입점업체(사용자 동의 필요)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계로 판별할 수 있는 형식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접근에 대한 인터페이스 등 데이터접근성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규정

□ (유럽연합: EU) EU는 2010년대초부터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디지털세 도입 시도, 데이터 공유 의무화 등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

- EU 차원에서 빅테크 및 플랫폼 규제 입법은 2015년 5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 2016년부터 시작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6월 2일 EC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패키지와 새로운 경쟁법 수단(NCT, New Competition Tool)의 도입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
- 2020년 12월15일에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에 해당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 초안을 공개
 - * 디지털서비스법안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기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선거, 공중보건 등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적 시도 등 플랫폼을 악용하는 일이나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 * 플랫폼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 연간 매출액의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플랫폼의 영업을 일시적으로 금지 가능
 - * 디지털시장법안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고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게이트키퍼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제시

□ (영국) 영국에서도 의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방향을 제시

- 우선 디지털시장부서(Digital Markets Unit, DMU)를 영국의 시장감시기구인 경쟁시장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내에 2020년 4월에 설치
- 디지털 분야의 규제 영향 평가, 규제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시장에서의 새로운 위협 포착, 디지털 시장의 소비자 반응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
- CMA는 실질적이고 확고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시장지배력의 영향이 특히 광범위하며 중요한 기업을 전략적 시장지위(Strategic Market Status)를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새로운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시
 - * 이러한 행동강령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영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들이 내린 결정을 중지, 차단, 반복하게 할 수 있으며,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령하고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전세계 수익의 최대 10%까지) 부과 가능
 - * 또한 CMA는 사회관계망서비스(SMS, social media service)에 대해서는 강화된 합병규칙을 적용하여 SMS 합병과 관련된 거래를 보다 면밀하게 조사
- 빅테크 플랫폼이 관여하는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CMA에 설치된 DMU를 범정부적인 독립관청으로 승격할 것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